

재정운용세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재정운용 세칙]

2023.09.03. 제 정

전문

제 1 장	총칙	1~5
제 2 장	재정 운용의 원칙	6~7
제 3 장	회계	8~9
제 4 장	기구 별 재정	10~16
제 5 장	세칙 개정	17~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 운용단위의 재정 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본회의 재정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대표자의 책임)

- ① 학생회장단, 집행위원회 등은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집행위원회는 본회 재정 운용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본회의 집행기구 재정 운용에 적용한다.

제5조(정보공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집행위원회는 모든 경비의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제2장 재정 운용의 원칙

제6조(예산안 · 결산안 심의의 원칙)

-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집행기구는 예산안 · 결산안을 공개하여야한다.
- ② 예산안은 본 세칙 8조(예산안의 편성)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결산안은 다음 각 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
 1. 온라인 결제 : 온라인 영수증
 2. 오프라인 결제 : 결제시 영수증
 3. 예산집행에 관한 거래내역서

4 예산안 · 결산안의 작성은 재정 활동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 집행의 원칙)

-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는 본회 각 기구의 운영, 행사, 사업, 홍보 등에 사용된다.
-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는 각 기구에 소속된 위원의 편익을 위해서는 운용될 수 없다. 단,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할 수 있다.
- ③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의 집행은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④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의 집행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 ⑤ 제1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회계

제8조(예산안의 편성)

- ① 예산안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 · 관 · 항 · 목 · 단가 · 수량 · 합계 형식으로 하되 항은 각 사업별, 행사별로 구분하고, 목은 물품의 종류 별로 작성하여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필요 시 세항과 세목을 추가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 ③ 예산안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④ 예산안은 지출내역을 편성하여 해당 학기 초 학생총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학생총회의 불발 또는 중도 폐회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결산안의 작성)

- ① 결산안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 · 관 · 항 · 목 · 단가 · 수량 ·

합계 형식으로 하되 항목은 각 사업별, 행사별로 구분하고, 목은 물품의 종류별로 작성하여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정한다.

- ② 필요 시 세항과 세목을 추가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모든 결산에는 본 세칙 6조 3항에 의거하여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결산안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⑤ 결산안은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해당 학기 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학생총회의 불발 또는 중도 폐회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기구 별 재정

제10조(의결기구 재정)

-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의결기구 재정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기구 운영에 사용된다.
- ② 의결기구 재정은 배정 없이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은 집행위원회에 있다.
- ③ 의결기구 재정은 사무용품비 및 의결기구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행기구 재정의 예산안·결산안 작성 시 작성하며, 총무부장이 집행기구 예산안·결산안에 포함하여 학생총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제11조(집행기구 재정)

- ① 집행기구의 재정은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 재정 운용의 책임은 학생회장단과 총무부에게 있다.

제12조(집행기구의 학생회비 배정)

- ① 집행기구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누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1. 부서별 행사 및 사업 재정

2. 운영비 및 사무비
3. 그 밖의 재정

제13조(차기 집행기구 이월금)

-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당해년도 집행기구의 학생회비 집행의 잔액을 차기 집행기구 이월금으로 배정한다.

제14조(부서별 비용)

- ① 부서별 비용은 집행위원회 부서별 업무의 추진, 활동, 행사, 사업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15조(운영비)

- ① 운영비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 ② 운영비는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6조(기타운영비 재정)

- ① 기타운영비 재정은 선거공영기금과 각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 되며, 본회 예비금을 포함한다.
- ② 기타운영비 재정 운용의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 상설위원회의 재정 담당자 혹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 있다.

제5장 세칙 개정

제17조(제정·개정·폐지)

- ① 본 세칙개정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본회 회원 1/10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18조(결정)

- ① 세칙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 발의 시 학생총회 의장은 48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세칙개정 발의 7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이 때, 특별한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긴급 소집이 가능하다.
-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재정운용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학생총회에서 정회원과 준회원 1/5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총회의 불발 또는 중도 폐회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